

## 부설연구소 설치 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예원예술대학교(이하 "본교" 라 한다)에 설치되는 부설연구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각 연구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연구소의 설치)** 연구소는 기존의 학내 연구조직이 담당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학문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거나 교외의 재정지원을 확보함으로써 본교의 학술연구 진흥에 기여할 수 있을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.

**제3조(연구소의 소속)** ① 연구소는 대학부속 또는 부설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연구소로서 재정조달이 확실하고 복수의 대학에 해당하는 학문영역을 갖거나 교외 기관과의 공동 연구 기능을 갖게 되는 경우에는 부속 또는 부설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**제4조(연구소의 신설요건)** ① 연구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명칭
2. 설립취지 및 목적(학술연구 목적에 한함)
3. 설립의 필요성 및 배경 : 기존 타 연구소를 활용하기 어려운 이유 제시 및 설립배경 설명
4. 위치
5. 조직표
6. 연구위원, 운영위원회, 기타 위원 명단
7. 운영 및 사업계획서(단기,장기)
8. 규정(안)
9. 기타 필요한 서류

② 전항 제8호의 규정(안)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.

1. 목적
2. 조직(기구, 직무, 감사, 간사 등)
3. 임무(위원회의 의결사항 등)
4. 활동(회의, 의결방법 등)
5. 보칙(시행, 의결서, 회의록 등)
6. 기타(재정, 해산, 보고 등)

**제5조(연구소의 지휘·감독)** ① 총장은 연구소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휘·감독한다.

1. 연구소의 연구활동 및 장기발전계획
2. 연구소의 조직 및 시설운영사항
3. 연구소의 재정 및 연구비 운영상태
4. 외부용역 연구사업
5. 기타 연구소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연구소장은 전항의 사항에 대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총장은 제1항 제4호의 사업이 소속 연구원 본연의 직무인 교수, 연구, 학생지도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용역사업에 대한 연구활동을 조정할 수 있다.

**제6조(연구소 지원)** 총장은 부속 또는 부설연구소의 원활한 운영과 학술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학술연구비
2. 운영비, 학술행사 및 연구소 발간경비, 특정목적 사업비 등으로 소요되는 보조금

3. 연구원, 조교, 사무직원, 기능직 등의 연구인력
4. 실험실습 기자재 등 연구시설
5. 기타 연구소의 운영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**제7조(연구소 평가)** ① 산학협력단에서는 외부기관의 지원에 의하여 선정된 연구소(센터)를 제외한 각 연구소운영실적을 매년 평가한다.

② 연구소 운영실적 평가는 부설연구소 평가척도 [별표1]의 기준에 의거 실시한다.

③ 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④ 평가등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1. 최우수 : 270점 이상
2. 우수 : 210점~269점
3. 보통 : 150점~209점
4. 미흡 : 150점 미만

⑤ 연구소 운영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우수연구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**제8조(연구소의 통폐합)** ① 총장은 기존 연구소의 연구기능 및 학문활동이 유사하거나 연구영역이 중복되어 조직운영과 연구의 효율성 제고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이를 통합할 수 있다.

② 부설연구소의 연구활동이 극히 저조하다고 판단되거나 설치목적 또는 공익에 위배된 활동을 할 때에는 이를 폐지할 수 있다.

**제9조(연구소의 조직)** ① 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<개정 2013.12.4>

② 연구소는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또는 기타의 기구를 둘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사항은 연구소 규정으로 정한다.

③ 간사는 연구소장이 임명한다.

④ 연구소의 사무처리와 연구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 또는 조교를 두거나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본교의 교직원에게 사무를 위촉할 수 있다.

⑤ 연구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**제10조(연구원 등)** ① 연구소의 연구 활동과 지원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원을 둘 수 있다.

1. 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주업무로 담당하는 전임 연구원
2. 소속 대학 교원으로서 소정의 절차에 의거 연구소의 연구원을 겸임하는 겸임연구원과 타 기관 소속의 자를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위촉하여 연구를 겸임하는 특별 연구원
3. 연구 활동에 필요한 보조 연구원

**제11조(규정제정 및 개정)** 연구소의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검토와 규정심의회위원회 및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**제12조(회계년도)** 각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와 같다.

부 칙(2001. 3. 01.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3. 10. 6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9. 2. 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3. 12. 4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 부설연구소평가척도]

부설연구소 평가척도

대항목	중항목	소항목	배점	수준	자체점수	조정점수
1. 연구실적 및 활동 (150점)	1.1 연구실적 (60점)	(1) 최근 1년간 부설연구소의 연구실적	60	A B C D E		
	1.2 연구소의 연구활동 (90점)	(1) 최근 1년간 부설연구소의 연간 외부 수주 실적 (2) 부설연구소의 자체 연구기금의 확보 실적 (3) 최근 1년간 부설연구소의 학술활동 실적	20 10 60	A B C D E A B C D E A B C D E		
2. 산학연 협동 (70점)	2.1 산학연 공동연구실적 (20점)	(1) 최근 1년간 산학연 위탁공동 연구비	20	A B C D E		
	2.2 국내, 외 대학간 협력 (30점)	(1) 최근 1년간 국외 대학과 협력실적 (2) 최근 1년간 국내 대학과 협력실적	15 15	A B C D E A B C D E		
	2.3 대외연구 활동 (20점)	(1) 최근 1년간 산업체 및 외부기관(단체)와 연구교류 및 기술, 자문 지도, 외부와 단체위원회에서 한 활동실적	20	A B C D E		
3. 연구소 운영실적 (80점)	3.1 연구소 조직 및 운영 실적 (40)	(1) 연구소의 조직 구성	10	A B C D E		
		(2) 연구소 운영 회의실적	15	A B C D E		
		(3) 연구소의 운영실적	15	A B C D E		
3.2 장·단기 사업계획(30점)	(1) 연간 사업추진계획서	15	A B C D E			
	(2) 연구소 장기발전전략 수립	15	A B C D E			
3.3 연구지원 체제 시스템 구축(10점)	(1) 연구소 홈페이지 구축	10	A B C D E			
합 계			300			

※ 점수는 수준에 따라 각 배점의 A는 100%, B는 80%, C는 60%, D는 40%, E는 0%로 계산함.

※ 논문(인문·사회·예능계열은 6편 이상, 자연(체육포함)·의학계열은 8편 이상)게재하여 발행한 연구소보는 년 1권에 한하여 연구소 평가시 20점을 가산한다.